

(미소주간보호센터)

성폭력 예방 및
대응 지침

2025.12.

1. 성폭력이란?

● 육체적 행위

- ①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
- ②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
-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
● 언어적 행위

-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
-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- 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-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- ⑤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

● 시각적 행위

- ①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
-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● 기타 행위

-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● 성희롱

-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,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(요양보호사 및 수급자)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● 성폭력

- 성폭력은 성(性)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,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 전화, 성기노출,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.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,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.

◆ 성폭력의 법적 성립요건

- ① 시설(센터)직원과 어르신, 남녀 어르신 등.
-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됨.
-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.

◆ 성폭력 관련 법규

- ①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을 해서는 안된다.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9제2호
- ②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 - 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의3제1호

◆ 시설(센터) 내 성폭력 행위성 요건

1) 육체적 행위

- ①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.
- ②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할 시 가슴, 엉덩이,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.
- ③ 평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것 등.

2) 언어적 행위

- ① 어르신과 대화 중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
- ② 어르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.
-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.
- ④ 어르신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.
- ⑤ 어르신의 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.

3) 시각적 행위

- ①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.
-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.
- ③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.

2.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

-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이다.
-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. 근친, 친인척, 애인, 데이트 상대, 선후배, 직장 상사, 동료, 이웃사람.
-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, 학교, 학원 주변, 유치원, 화장실, 직장, 여관, 공원, 만화방, 아파트 놀이터, 뒷산 약수터, 노래방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.
-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.
- 성폭력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발생된다.

◆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(직원 : 수급자)

-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,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.
-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.
-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-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.
-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.
-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,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.
-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다.
-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.
-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.

[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]

- :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, 몸을 쓰다는 경우
-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
- 어르신의 얼굴,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
-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,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
-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

◆ 기관의 대응방법

-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,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
-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
-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
 -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
 -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(유형1 또는 유형2)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.
 -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.

◆ 개인의 대응방법

-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.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.
-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- ④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(성폭력피해신고 ☎1899-3075, 여성긴급상담전화 ☎1366)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.
-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.
-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
 -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.
 -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,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 -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,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.

◆ 요양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수급자의 대응방법

- ①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③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④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◆ 서비스 중 수급자로부터의 성희롱 대응방법

-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.
- ②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.
- ③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.
- ④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.
- ⑤ 외부기관(성폭력상담소, 여성 노동 상담소) 등에 상담한다.
-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을 숙지한다.

◆ 치매 수급자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응방법

- ①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.
- ② 옷이 너무 꼭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,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.
- ③ 만약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『손 치우세요!』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.
- ④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,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
- ⑤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⑥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하도록 한다.

3. 권리구제 및 성희롱 피해 상담 연락처

- ☎ 033-811-228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
- ☎ 1331 국가인권위원회
- ☎ 1366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
- ☎ 112 경찰 고발 신고
- ☎ 1350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